

## 2018 교육급여 신청 안내

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(연 5만원)를 신규 지원하고, 중고등 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금액이 95,300원에서 162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

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

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,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(129), 중앙상담센터(1544-9654),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- ①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

< 2018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(중위소득 50%) >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월 소득인정액	83만원	142원	184만원	225원	267만원	309만원

- ② 교육급여는 부양의부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③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: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

\*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(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)

### ■ 얼마나 지원 되나요?

구분 \ 급여종류	부교재비	학용품비	교과서대	입학금 및 수업료
초등학생	66,000원	50,000원	-	-
중학생	105,000	57,000원	-	-
고등학생	105,000	57,000원	교과목 전체	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지급횟수	연 1회	연 2회 (분할지급)	연 1회	입학금은 입학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
### 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(온라인 신청 안됨)  
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(주민센터 비치), 통장사본, 신분증이며,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< 교육급여 지원 절차 >

신청/접수

소득재산조사

지원대상 결정

읍면동  
주민센터

시군구

학교

2018. 3. 2.

왕 북 초 등 학 교 장